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과 법령 간 괴리 해소를 위해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험생 편의, 행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이 ‘필기시험’과 ‘실기구술시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용어정리
나.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다. ‘실기시험’을 ‘실기’, ‘구술시험’을 ‘구술’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기시험:”을 “실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술시험:”을 “구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실기시험과 구술시험”을 “실기와 구술”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서식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뒤쪽)

수험원서 작성방법

- 이 원서는 전문스포츠회지도사, 생활스포츠회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회지도사, 노인스포츠회지도사, 유소년스포츠회지도사 구분없이 사용하며, 자격종류, 자격등급 및 자격종목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cm× 4cm)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자격종류 ② ㉞: 응시하려는 자격종류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전문스포츠회지도사
 5. 자격등급 ③ ㉞: 응시하려는 자격등급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 2급
 6. 자격종목 ④ ㉞: 응시하려는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검도
 7. 응시자격 ⑤: 응시하려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 국가대표선수
 8. 응시기관 ⑥ ㉞: 응시하려는 자격검정기관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9. 성명 ⑦ ㉞ : 한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10.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1. 전화번호 ⑨: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2. 주소 ㉞: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세부주소(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13. 최종 학력 ㉞: 최종 출신학교, 재학·휴학·졸업·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로 표시하고 전공학과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구술시험)시부터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당 시험 1회를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실기구술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기구술시험은 반드시 수험자가 지원종목에 맞는 운동복 및 기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렌,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4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필기시험 접수마감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실기구술시험 접수마감일)까지 수험자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실기구술시험의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필기시험 시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까지 포함된 것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카금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안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은 수화로 응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실기기술과 지도능력
2. 구술시험: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규칙과 운영방식의 이해도, 지도자의 적성 및 언어구사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은 운동 수행방법의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의

제5조(자격검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실기구술시험-----

-- 평가한다. -----

1. 실기: -----
--
2. 구술: -----

--
③ -----

----- 실기구술시험-----

---.
④ -----
---- 실기구술시험-----

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연수기관이 연수 과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③ (생 략)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